

더샵 청주그리니티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건본주택 운영 안내 ♣

- '더샵 청주그리니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건본주택(www.더샵청주그리니티.com)이 운영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홈페이지(www.더샵청주그리니티.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이 필요한 일정은 '방문예약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건본주택 방문은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더샵 청주그리니티' 상담전화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참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제출 방법 및 일정, 당첨자 건본주택 관람 일정,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건본주택 입장 가능 여부 대상 구분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한 경우	건본주택 입장이 불(不)가능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신 2차 접종완료(14일 경과) ~ 6개월 이내 미접종자 :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확인 문자 제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기 '1)' 또는 '2)'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해제확인서(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지참 접종 예외자는 의사 소견이 첨부된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지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한 경우 이외의 자 건본주택 입장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제한 및 즉시 퇴관 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건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 체온이 37.5°C가 넘을 경우 (비접촉체온계 및 열화상카메라 운영 예정) 건본주택 입장 시 손 소독, 체온측정, 전자출입명부(QR코드) 및 방문자기록 등 방역 절차에 불응할 경우 기타 코로나19 감염 유사 증상(기침, 발열 등)이 있거나, 건본주택 운영 방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사이버 건본주택 운영으로 분양상담전화(☎1670-3663)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상담 연결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고객 여러분들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상담하기 어렵고, 제한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하여 청약자격, 제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관련하여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동·호수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 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보양, 생애최초	1순위(해당지역)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1순위(기타지역) 청주시 1년 미만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2순위			
일정	2022.02.07(월)	2022.02.08(화)	2022.02.09(수)	2022.02.10(목)	2022.02.16(수)	2022.02.17(목) ~ 2022.02.22(화)	2022.03.07(월) ~ 2022.03.16(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발송일 기준)	방문 예약제 (*예약된 지정 일시 방문)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02 (분평동 332) (우편번호: 28635) 분양홈페이지 : www.더샵청주그리니티.com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에 1년(2021.01.26. 이전부터 거주) 이상 연속하여 거주(해당지역 대상자)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30~15:3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등기우편 접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예비입주자의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공통)

알려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26.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청주시(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이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에 당첨되실 경우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1항제7호)	7년간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원 모두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6)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1년(2021.01.26. 이전부터 거주)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청주시에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 중 우선공급(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연속 90일 초과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해외체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 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 거주로 인정하는 해외체류 예외 규정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인 경우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단신부임)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과거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183일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 (특별공급 / 1·2순위)	○	○	○	○
APT (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내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가점제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 2017.09.20. 개정)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 당첨자선정 방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방식 및 지위 인정 기간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홈페이지(www.더삼청주그리니티.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청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를 분양계약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에 해당할지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매 동의를 득하여 전매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 일부 납입 시에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잔금 완납(중도금 대출 상환 및 소유권 이전 여부와는 무관함) 시에는 전매가 불가합니다. (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출산 또는 입양자격(신혼부부·다자녀가구·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분양권 전매 불가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2651(2022. 1. 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산104-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3층~지상30~38층, 7개동 총 1,1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공급 774세대

특별공급 417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6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1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36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6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내역 및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1001011	01	063.7997	63	63.7997	21.4508	85.2505	37.3515	122.6020	36.3793	128	12	12	25	12	3	64	64	4
		02	084.7621A	84A	84.7621	28.2287	112.9908	49.6241	162.6149	48.3323	417	41	41	83	41	12	218	199	12
		03	084.7214B	84B	84.7214	28.4443	113.1657	49.6002	162.7659	48.3091	141	14	14	28	14	4	74	67	4
		04	099.8624A	99A	99.8624	32.3657	132.2281	59.8177	192.0458	56.9427	298	-	29	-	-	8	37	261	9
		05	099.3857B	99B	99.3857	32.2601	131.6458	59.5322	191.1780	56.6708	94	-	9	-	-	2	11	83	3
		06	140.5182	140	140.5182	42.7196	183.2378	84.1709	267.4087	80.1251	107	-	10	-	-	3	13	94	3
		07	160.8827P	160P	160.8827	55.1934	216.0761	96.3692	312.4453	91.7371	3	-	-	-	-	-	-	3	-
		08	170.5368P	170P	170.5368	58.6021	229.1389	102.1521	331.2910	97.2420	3	-	-	-	-	-	-	3	-
합계											1,191	67	115	136	67	32	417	774	35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면적 환산방법(㎡→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현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처리),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은 1층 및 필로티가 있는 경우 필로티 위층 세대를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후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63.7997	084.7621A	084.7214B	099.8624A	099.3857B	140.5182	160.8827P	170.5368P
약식 표기	63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구분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입주지정일							
063.7997	128	101동 5호 102동 5호	1	2	69,350,440	150,949,560		220,30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22,030,000	66,090,000
			2	4	71,868,840	156,431,160		228,300,000	22,830,000	22,830,000	22,830,000	22,830,000	22,830,000	22,830,000	22,830,000	68,490,000
		3	4	73,537,280	160,062,720		233,600,000	23,360,000	23,360,000	23,360,000	23,360,000	23,360,000	23,360,000	23,360,000	70,080,000	
		4	4	75,205,720	163,694,280		238,900,000	23,890,000	23,890,000	23,890,000	23,890,000	23,890,000	23,890,000	23,890,000	71,670,000	
		5	4	76,874,160	167,325,840		244,200,000	24,420,000	24,420,000	24,420,000	24,420,000	24,420,000	24,420,000	24,420,000	73,260,000	
		6	4	78,542,600	170,957,400		249,500,000	24,950,000	24,950,000	24,950,000	24,950,000	24,950,000	24,950,000	24,950,000	74,850,000	
		7~10	16	80,211,040	174,588,960		254,800,000	25,480,000	25,480,000	25,480,000	25,480,000	25,480,000	25,480,000	25,480,000	76,440,000	
		11~20	40	81,879,480	178,220,520		260,100,000	26,010,000	26,010,000	26,010,000	26,010,000	26,010,000	26,010,000	26,010,000	78,030,000	
		21~30	40	83,547,920	181,852,080		265,400,000	26,540,000	26,540,000	26,540,000	26,540,000	26,540,000	26,540,000	26,540,000	79,620,000	
		101동 4,5호	31층 이상	10	85,216,360	185,483,640		270,70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27,070,000	81,210,000

(단위 : m², 세대,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구분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2.08.03	2023.03.03	2023.10.04	2024.06.03	2024.12.03	2025.06.03			
084.7621A	417	102동 2호 103동 1,4호 104동 1,4호	1	5	94,377,040	205,422,960		299,80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29,980,000	89,940,000	
			2	12	97,745,400	212,754,600		310,50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31,050,000	93,150,000
		101동 2,3호 102동 2,3호 103동 1,2,3,4호 104동 1,2,3,4호	3	12	100,011,960	217,688,040		317,70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95,310,000
			4	12	102,278,520	222,621,480		324,90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32,490,000	97,470,000
			5	12	104,513,600	227,486,400		332,0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33,200,000	99,600,000
			6	12	106,780,160	232,419,840		339,20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33,920,000	101,760,000
			7~10	48	109,046,720	237,353,280		346,40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34,640,000	103,920,000
			11~20	120	111,281,800	242,218,200		353,50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106,050,000
			21~30	120	113,548,360	247,151,640		360,70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36,070,000	108,210,000
31층 이상	64	115,814,920	252,085,080		367,90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110,370,000			
084.7214B	141	102동 1호 103동 5호	1	2	92,582,680	201,517,320		294,10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88,230,000	
			2	4	95,919,560	208,780,440		304,70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30,470,000	91,410,000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5호 104동 5호	3	4	98,123,160	213,576,840		311,70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31,170,000	93,510,000
			4	4	100,358,240	218,441,760		318,80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31,880,000	95,640,000
			5	4	102,561,840	223,238,160		325,80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32,580,000	97,740,000
			6	4	104,765,440	228,034,560		332,80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33,280,000	99,840,000
			7~10	16	107,000,520	232,899,480		339,90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33,990,000	101,970,000
			11~20	40	109,204,120	237,695,880		346,90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34,690,000	104,070,000
			21~30	40	111,439,200	242,560,800		354,0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35,400,000	106,200,000
31층 이상	23	113,642,800	247,357,200		361,0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36,100,000	108,300,000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구분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2.08.03	2023.03.03	2023.10.04	2024.06.03	2024.12.03	2025.06.03			
099.8624A	298	105동 3호 106동 3호 107동 3호	1	3	104,078,939	226,554,601	22,655,460	353,289,000	35,328,900	35,328,900	35,328,900	35,328,900	35,328,900	35,328,900	35,328,900	35,328,900	105,986,700	
		105동 3,4호 106동 3,4호 107동 3,4호	2	6	107,849,819	234,762,892	23,476,289	366,089,000	36,608,900	36,608,900	36,608,900	36,608,900	36,608,900	36,608,900	36,608,900	36,608,900	109,826,700	
		107동 2호	3	1	108,321,179	235,788,928	23,578,893	367,689,000	36,768,900	36,768,900	36,768,900	36,768,900	36,768,900	36,768,900	36,768,900	36,768,900	110,306,700	
		105동 2,3,4호 106동 2,3,4호 107동 3,4호	3	8	110,383,379	240,277,837	24,027,784	374,689,000	37,468,900	37,468,900	37,468,900	37,468,900	37,468,900	37,468,900	37,468,900	37,468,900	112,406,700	
		107동 2호	4	1	110,825,279	241,239,746	24,123,975	376,189,000	37,618,900	37,618,900	37,618,900	37,618,900	37,618,900	37,618,900	37,618,900	37,618,900	112,856,700	
		105동 2,3,4호 106동 2,3,4호 107동 3,4호	4	8	112,887,479	245,728,655	24,572,866	383,189,000	38,318,900	38,318,900	38,318,900	38,318,900	38,318,900	38,318,900	38,318,900	38,318,900	114,956,700	
		107동 2호	5	1	113,358,839	246,754,692	24,675,469	384,789,000	38,478,900	38,478,900	38,478,900	38,478,900	38,478,900	38,478,900	38,478,900	38,478,900	115,436,700	
		105동 2,3,4호 106동 2,3,4호 107동 3,4호	5	8	115,421,039	251,243,601	25,124,360	391,789,000	39,178,900	39,178,900	39,178,900	39,178,900	39,178,900	39,178,900	39,178,900	39,178,900	117,536,700	
		107동 2호	6	1	115,892,399	252,269,637	25,226,964	393,389,000	39,338,900	39,338,900	39,338,900	39,338,900	39,338,900	39,338,900	39,338,900	39,338,900	118,016,700	
		105동 2,3,4호 106동 2,3,4호 107동 3,4호	6	8	117,954,599	256,758,546	25,675,855	400,389,000	40,038,900	40,038,900	40,038,900	40,038,900	40,038,900	40,038,900	40,038,900	40,038,900	120,116,700	
		105동 2,3,4호 106동 2,3,4호 107동 2,3,4호	7~10	36	123,555,240	268,949,782	26,894,978	419,40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125,820,000
11~20	90		126,088,800	274,464,727	27,446,473	428,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21~30	90		128,592,900	279,915,545	27,991,555	436,50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43,650,000	130,950,000		
31층 이상	37		131,126,460	285,430,491	28,543,049	445,10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133,530,000		
099.3857B	94	105동 1호 106동 1호 107동 1호	1	3	104,612,460	227,715,945	22,771,595	355,10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35,510,000	106,530,000	
			2	3	108,294,960	235,731,855	23,573,185	367,60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36,760,000	110,280,000	
			3	3	110,769,600	241,118,545	24,111,855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4	3	113,214,780	246,441,109	24,644,111	384,30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115,290,000	
			5	3	115,689,420	251,827,800	25,182,780	392,70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39,270,000	117,810,000	
			6	3	118,134,600	257,150,364	25,715,036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7~10	12	120,609,240	262,537,055	26,253,705	409,40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122,820,000
			11~20	30	123,054,420	267,859,618	26,785,962	417,70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41,770,000	125,310,000
			21~30	30	125,529,060	273,246,309	27,324,631	426,10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127,830,000
			31층 이상	4	127,974,240	278,568,873	27,856,887	434,40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43,440,000	130,320,000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구분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2.08.03	2023.03.03	2023.10.04	2024.06.03	2024.12.03	2025.06.03	
140.5182	107	105동 5호	1	1	143,967,779	313,382,928	31,338,293	488,689,000	48,868,900	48,868,900	48,868,900	48,868,900	48,868,900	48,868,900	48,868,900	146,606,700
		106동 5호 107동 5호	1	2	147,064,320	320,123,345	32,012,335	499,20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49,920,000	149,760,000
		105동 5호	2	1	149,152,739	324,669,328	32,466,933	506,289,000	50,628,900	50,628,900	50,628,900	50,628,900	50,628,900	50,628,900	50,628,900	151,886,700
		106동 5호 107동 5호	2	2	152,249,280	331,409,745	33,140,975	516,80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51,680,000	155,040,000
		105동 5호	3	1	152,599,559	332,172,219	33,217,222	517,989,000	51,798,900	51,798,900	51,798,900	51,798,900	51,798,900	51,798,900	51,798,900	155,396,700
		106동 5호 107동 5호	3	2	155,696,100	338,912,636	33,891,264	528,50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158,550,000
		105동 5호	4	1	156,075,839	339,739,237	33,973,924	529,789,000	52,978,900	52,978,900	52,978,900	52,978,900	52,978,900	52,978,900	52,978,900	158,936,700
		106동 5호 107동 5호	4	2	159,172,380	346,479,655	34,647,965	540,30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54,030,000	162,090,000
		105동 5호	5	1	159,522,659	347,242,128	34,724,213	541,489,000	54,148,900	54,148,900	54,148,900	54,148,900	54,148,900	54,148,900	54,148,900	162,446,700
		106동 5호 107동 5호	5	2	162,619,200	353,982,545	35,398,255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65,600,000
		105동 5호	6	1	162,998,939	354,809,146	35,480,915	553,289,000	55,328,900	55,328,900	55,328,900	55,328,900	55,328,900	55,328,900	55,328,900	165,986,700
		106동 5호 107동 5호	6	2	166,095,480	361,549,564	36,154,956	563,800,000	56,380,000	56,380,000	56,380,000	56,380,000	56,380,000	56,380,000	56,380,000	169,140,000
		105동 5호 106동 5호 107동 5호	7~10	12	169,542,300	369,052,455	36,905,245	575,50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172,650,000
			11~20	30	173,018,580	376,619,473	37,661,947	587,30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58,730,000	176,190,000
21~30	30		176,465,400	384,122,364	38,412,236	599,0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31층 이상	17		179,941,680	391,689,382	39,168,938	610,80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61,080,000	183,240,000	
160.8827P	3	105동 2호	35	1	244,341,240	531,871,600	53,187,160	829,40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248,820,000
		106동 2호	34	1	244,341,240	531,871,600	53,187,160	829,40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248,820,000
		107동 2호	34	1	244,341,240	531,871,600	53,187,160	829,40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82,940,000	248,820,000
170.5368P	3	105동 4호	38	1	260,632,620	567,333,982	56,733,398	884,70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265,410,000
		106동 4호	37	1	260,632,620	567,333,982	56,733,398	884,70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265,410,000
		107동 4호	35	1	260,632,620	567,333,982	56,733,398	884,70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88,470,000	265,410,000

■ 청약신청 및 계약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주금의 납부

-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선납)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도 적용하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기타 입주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63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2	8	3	-	-	-	-	-	13
	국가유공자 등	1	4	1	-	-	-	-	-	6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4	13	4	-	-	-	-	-	21
	중소기업 근로자	4	12	5	-	-	-	-	-	21
	북한이탈주민	1	4	1	-	-	-	-	-	6
	소계	12	41	14	-	-	-	-	-	6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41	14	29	9	10	-	-	115
신혼부부 특별공급		25	83	28	-	-	-	-	-	136
생애최초 특별공급		12	41	14	-	-	-	-	-	6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12	4	8	2	3	-	-	32
합계		64	218	74	37	11	13	-	-	41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p> <table border="1" data-bbox="257 1034 2157 1259"> <thead> <tr> <th>구분</th> <th>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특별공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본인 한정)는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특별공급 상호 간 중복청약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 마감 이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공급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세대 : 총 67세대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 여부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애인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요건을 갖춘 분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북한이탈주민	통일부(하나원) 교육기획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 1)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2) **유의사항**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혼 및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나 입양자녀 포함)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없음	0	
세대구성 (3) *중복 선택 불가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해당 없음	0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를 말하며,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자로 봄)로서 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거주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1년 미만	0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산정 (※인터넷 청약 시 청약통장 정보 확인을 통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며 직접 선택은 불가)
		10년 미만	0	
계	100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자녀수로 인정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청약신청 시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대상세대 : 총 136세대
----------	------------------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계속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의 경우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 1)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2)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3)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4) **유의사항** :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헌인서는 인정 불가),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 **공급순서**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우선공급 :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② 일반공급 : 대상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③ 남은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 2순위 순으로 공급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재혼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無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계속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신혼부부)

3)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또는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하여 산정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 자녀 포함. 이하 같음)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4)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 120% 이하	6,030,161원 ~ 7,236,192원	7,094,206원 ~ 8,513,046원	7,094,206원 ~ 8,513,046원	7,393,648원 ~ 8,872,376원	7,778,024원 ~ 9,333,628원	8,162,400원 ~ 9,794,87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40%이하	6,030,161원 ~ 8,442,224원	7,094,206원 ~ 9,931,887원	7,094,206원 ~ 9,931,887원	7,393,648원 ~ 10,351,106원	7,778,024원 ~ 10,889,232원	8,162,400원 ~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60%이하	7,236,193원 ~ 9,648,256원	8,513,047원 ~ 11,350,728원	8,513,047원 ~ 11,350,728원	8,872,377원 ~ 11,829,835원	9,333,629원 ~ 12,444,837원	9,794,880원 ~ 13,059,838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442,225원 ~	9,931,888원 ~	9,931,888원 ~	10,351,107원 ~	10,889,233원 ~	11,427,360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	11,350,729원 ~	11,350,729원 ~	11,829,836원 ~	12,444,838원 ~	13,059,839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년)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입대확인서(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상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산 보유기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초과 대상)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 보유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주택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인 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무주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④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3) **소득세 납부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에 해당**

4-1)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60% 이하인 자

4-2)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5) **유의사항**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1) **공급순서**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우선공급 : 대상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
- ② 일반공급 : 대상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
- ③ 남은주택 (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기준** (*자세한 소득세납부 확인(입증)서류 안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구분(청약신청자 기준)	소득세납부 기준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①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연도의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①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과거 5개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청약자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기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 9,648,256원	9,222,468원 ~ 11,350,728원	9,222,468원 ~ 11,350,728원	9,611,742원 ~ 11,829,835원	10,111,431원 ~ 12,444,837원	10,611,120원 ~ 13,059,838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	11,350,729원 ~	11,350,729원 ~	11,829,836원 ~	12,444,838원 ~	13,059,839원 ~
		160% 이하	~ 9,648,256원	~ 11,350,728원	~ 11,350,728원	~ 11,829,835원	~ 12,444,837원	~ 13,059,838원
	1인 가구	160% 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648,257원 ~	11,350,729원 ~	11,350,729원 ~	11,829,836원 ~	12,444,838원 ~	13,059,83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포함되지 않음)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타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입대확인서(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등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 국민연금보험 가입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월액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전 '매출액 합계-매입액 합계')
 ※부가가치세 등 해당 서류발급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체의 서류심사기간(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상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위 '자산보유기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초과 대상)' 「참고」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청약자격 요건 :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및 무주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했을 것
- ② 세대주일 것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④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2) 유의사항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 **공급순서** :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1년(2021.01.26. 이전부터 거주) 이상 계속 거주자가 청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1순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은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는 세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1:2순위 청약 가능,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2순위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 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선정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규칙 제3조제2항제1호·2호·4호·6호·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요망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세대원 전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아래 기준사항 외 공통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순위별 가입 기간 충족 필요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청약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 청약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단, 동일 주택규모)
 - 청약예금 가입자 중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거주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당첨자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당첨으로 통보받은 자 중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니,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당첨자는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여 향후 부적격당첨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오기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분양가중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더이상 접수 불가)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영업점 운영시간 내)을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신청구분	청약 관련 신청자격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 추첨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2) 전용 85㎡ 초과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및 과거 2년 내 민영주택에 가점제 당첨된 사실(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이 있는 세대에 속한 세대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1'분양권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조건 승낙(서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현재 잔액 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현재 잔액 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지역 해당) ③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 상기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예치금액 무관)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당첨 사실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는 2순위 청약 불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일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지역 :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청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 충청북도 거주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외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규칙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합니다. •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무주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제외) -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필요 시 추가 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 대상자에 포함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등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등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등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등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IV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입주자선정 방법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 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접수 불가
		건본주택 : 10:00~14:00	• 더샵 청주그리니티 건본주택 청약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더샵 청주그리니티 건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02 (분평동 332)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2.02.08(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청주시 1년 미만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2022.02.09(수) 09:00~17:30		
	2순위	2022.02.10(목) 09:00~17:30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문의 1670-3663)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단,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30~15:30)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어 청약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도 대리인에 해당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추첨제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청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청약 및 재당첨 제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되고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특별공급 청약접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건본주택 방문접수 대상자의 경우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청약신청 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 후 적격 여부 확인) •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 부적격당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향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동·호수)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자격 확인 (서류 확인)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02.16(수) • 확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추후 별도 통보) • 제출기간 : 2022.02.17(목) ~ 2022.02.22(화)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상기 제출기간은 우편발송일 기준임 • 제출장소 : 더샵 청주그리니티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02 (분평동 332)) (우편번호 28635)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제출 방식은 등기우편 접수가 원칙이며, 상기 서류제출 기간 중 우편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www.더샵청주그리니티.com)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되오니,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당첨자 및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접수 건수 과밀로 인한 서류검토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제출 일정 및 접수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공급계약체결 전 입주자자격 확인 및 계약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일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기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한하며,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동·호수 배정 추첨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2.16(수) ~ 2022.02.25(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 (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 (10일간)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2.1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건본주택 청약신청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해당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신청당일 건본주택 내 현장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만 해당하며, 해당 특별공급 서류를 완비 후 신청자격 여부 확인 후 적격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 서류접수를 완료하여 자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특별공급 약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약서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제출 • 건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건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 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일반(기관추천) 청약신청자 및 당첨자의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당첨자(청약신청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	해당 기관별 추천 명단	-	•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해당기관의 추천대상자는 사업주체(건본주택)에서 확인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 ~ 만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해당자	• 소득증빙 대상 세대원(성년자) 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견본주택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당첨자(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로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해당자	• 소득증빙 대상 세대원(성년자) 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배우자 제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위임장	당첨자(청약신청자)	·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레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자격확인 제출서류 (※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가점제/추첨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가점제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 (배우자 제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을 주민등록표상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원,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 구분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사실 입증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T.157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T.157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T.157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자영업자/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 (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확인각서 *소득입증서류 제출 대상자 중 무직자는 서류제출 시 해당자가 무직자임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주민등록표등본상 연필로 대상자에 '무직자'로 표시)	• 견본주택 비치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접수 및 당첨자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예비순번)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구분	신청대상자	예비입주자(예비순번) 발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동·호수 추첨/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2.02.16(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개별 연락 예정 (서류제출 일정 및 동·호수 추첨 일정 등)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견본주택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급일정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개별조회가 가능하며, 최초 계약이 가능한 날부터 예비입주자 지위 인정 기간까지 분양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Home'에서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별 통신사업자의 시스템 제한, 고객의 요청, 개인별 휴대폰 기능 제한 등으로 인해 SMS, MMS의 전송 및 도달 또는 통화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적격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자동으로 추첨되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에 한하여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빨라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정당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정당 당첨의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일반공급 정당 당첨의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 후 잔여 물량 포함)하며, 공급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당첨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따른 소멸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견본주택에 방문(사전방문 예약)하여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약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VI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체결 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2.03.07(월) ~ 2022.03.16(수) [10일간] [방문 예약제] *추후 분양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운영	• 더샵 청주그리니티 건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02 (분평동 332번지)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주)하나은행 273-910009-801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주)하나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계약자간의 납부계좌는 상이합니다.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서 세대별로 상이하며, 향후 공급대금 관리계좌((주)하나은행 273-910009-80104)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계약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계약금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부영수증, 입금 확인증, 캡처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으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대리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대리계약 시 상기 구비서류와 함께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도장(또는 대리인 서명)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에 해당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특별공급 및 1, 2순위 당첨자)는 지정 계약기간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도 함께 진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기타 분양일정상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 예정임)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아래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부적격 사항 소명이 완료되어야만 지정 계약기간 이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또는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으며(감독기관 실태조사, 전산검색결과 등),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 해지 조치 및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관계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분양보증 관련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릅니다.

■ 신고 의무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등은 동법 제8조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및 법인)는 동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상기 법령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 및 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건설되어 LTV·DTI·DSR 등 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받으며, 시행위탁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고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까지입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까지의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입주 시 정산하기로 하며, 이자정산일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세대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지원이 없으며,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을 입주 개시 전에 중도 상환한 경우 별도의 이자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의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시행위탁자가 납부한 중도금대출 납부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변경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검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63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발코니 확장 공사비		13,000,000	16,000,000	18,000,000	18,000,000	20,000,000	23,000,000	29,000,000	33,000,000
계약금 (10%)	계약시	1,300,000	1,600,000	1,800,000	1,800,000	2,000,000	2,300,000	2,900,000	3,300,000
중도금 (10%)	2022.08.03	1,300,000	1,600,000	1,800,000	1,800,000	2,000,000	2,300,000	2,900,000	3,300,000
잔금 (80%)	입주지정일	10,400,000	12,800,000	14,400,000	14,400,000	16,000,000	18,400,000	23,200,000	26,400,000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 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 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시행위탁사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행위탁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홈스타일초이스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하나은행	273-910009-824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발코니 확장 공사비의 납부주체(타인명의 등)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계약 미체결), 중도금 미납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시에만 계약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제조사
					계약시	2022.08.03	입주지정일	
63	선택1	2대	거실+안방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삼성
	선택2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84A, 84B	선택1	3대	거실+안방+주방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선택2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99A, 99B	선택1	3대	거실+안방+주방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선택2	5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140	선택1	3대	거실+안방+주방	5,700,000	570,000	570,000	4,560,000	
	선택2	6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침실3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160P, 170P	선택1	4대	거실+안방+주방+침실1	7,300,000	730,000	730,000	5,840,000	
	선택2	6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침실3	9,800,000	980,000	980,000	7,840,000	
	선택3	7대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900,000	1,190,000	1,190,000	9,52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 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84A, 84B, 99A, 99B, 140 타입 알파룸(룸인룸 옵션 선택 시 룸인룸 포함)에는 실내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총 2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 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미설치되는 공간에 대한 추가적인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 매립박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63타입 '선택1'(거실+안방 설치)을 선택 시 '선택2'에서 추가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공간(침실1, 침실2)의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 매립박스는 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내기의 위치는 입주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일부 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로 에어컨(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 등)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모델명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위탁사(구룡개발㈜)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 공정상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및 안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제품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시행위탁사(구룡개발㈜)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시행위탁사(구룡개발㈜)와 계약자가 직접 계약하고, 시행위탁사(구룡개발㈜)가 시공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에어컨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해당 세대 및 아래층 세대를 포함하여 세대 천장, 벽체, 바닥 마감공사, 석고보드, 도배지 재시공, 마루 마감재 재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하자 처리는 입주자와 시행위탁사(구룡개발㈜)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어컨 하자 발생 시 이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포스코건설)는 무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하자 발생시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은 없지만, ㈜포스코건설에서 우선 하자보수에 응하고, 구룡개발㈜와 협의 및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713737-01-007344	구룡개발 주식회사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납부주체(타인명의 등)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계약 미체결), 중도금 미납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는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포스코건설)와는 무관하며, 시행위탁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에만 계약 가능)

1)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2.08.03	입주지정일
비스포크(유리도어) 냉장고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삼성] 1도어(냉장) RR40A7995AP(우) / RR40A7895AP(좌) [삼성] 1도어(변온) RZ24A59G0AP(우) / RZ24A58G0AP(좌) [삼성] 1도어(김치) RQ34A7945AP(우) / RQ34A7845AP(좌)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오브제 냉장고	99A, 99B, 140, 170P	[LG] 냉장 BC1L1AA1(S) [LG] 냉동 BC1F1AA(S) [LG] 김치 BC1K1AA1(S) ※99 타입 본다이닝형 선택 시 '오브제 냉장고' 선택 불가 ※160P 타입 오브제 냉장고 선택 불가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BI 김치냉장고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삼성] RQ22K5L(R)01EC [LG] K221PR14BL1/R1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전기오븐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삼성] HSB-N361B	400,000	40,000	40,000	320,000
		[LG] MZ385EBT	430,000	43,000	43,000	344,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DW60T7075FS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LG] DUB22S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음식물처리기	전타입	[지비앤디] GB-200	750,000	75,000	75,000	600,000
인덕션	전타입	[삼성] NZ63R6707MR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LG] BEI3GTBI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청정환기유니트 (일반형)	63, 84A, 84B, 99A, 99B	[경동나비엔] TAC521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140	[경동나비엔] TAC521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160P, 170P	[경동나비엔] TAC521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청정환기유니트 (고급형)	63	[경동나비엔] TAC521-NRT30D (4실제어)	3,340,000	334,000	334,000	2,672,000
	84A, 84B	[경동나비엔] TAC521-NRT30D (5실제어)	3,750,000	375,000	375,000	3,000,000
	99A, 99B	[경동나비엔] TAC521-NRT30D (5실제어)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140	[경동나비엔] TAC521-NRT30D (6실제어)	4,950,000	495,000	495,000	3,960,000
	160P, 170P	[경동나비엔] TAC521-NRT30D (6실제어)	5,380,000	538,000	538,000	4,304,000

- 가전제품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는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은 시공되지 않으며, 기본제공(의무)되는 제품의 비용은 추가선택품목 판매가 산정 시 감액되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기본제공(의무)되는 전열교환기 대신 청정환기유니트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일반형은 1개의 이동형(포터블) 타입 실내 공기질 측정장치로 세대 전체가 통합 제어되며, 고급형은 각 실마다 실내공기질측정 장치 및 전동 디퓨저가 설치되어 각실 제어가 가능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선택 시 160P, 170P 타입은 실외기실, 다용도실에 총 2개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 미선택 및 일반형 선택 시 고정 디퓨저가 설치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의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일반형(통합 제어) 선택 시 이동형(포터블) 타입의 제품이 세대당 1개와 청정환기시스템용 3.5인치 Color TFT LCD 룸콘이 설치되며, 고급형(각실 제어) 선택 시 실내공기질측정(AIG) 장치는 각 방마다 룸콘 일체형으로 설치됩니다.
- 침실 룸인룸 옵션을 선택한 63 타입의 경우 룸인룸의 환기는 침실2와 통합 제어됩니다.
- 청정환기유니트의 설치 위치는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정환기유니트의 필터 교체는 사용시점 기준으로 연 1회 이상을 권장해 드립니다.
- 청정환기유니트의 작동을 위한 컨트롤러는 주방에 노출 시공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처리기 선택 시 운수분배기와와의 간섭으로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장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만큼 수납 공간은 줄어듭니다.
- 음식물처리기 선택 시 제품 설치 위치와 싱크대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처리기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음식물탈수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싱크대 하부 가림막 길이가 변경됩니다.
- 음식물처리기 배출구의 배출 고무는 성능 유지 차원에서 년 1회 교환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소모성 교환 품목은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은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키친핏, LG 오브제 냉장고 유상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추가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키친핏, LG 오브제 유상옵션 미선택 시 빌트인 오븐 설치 공간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키친핏, LG 오브제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일부 상부장만 제공되므로 도어 및 틀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유상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장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내 안내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가전 설치 시 가전 크기에 따라 가전이 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김치냉장고 또는 비스포크 키친핏, LG 오브제 선택 시 가구 및 가전의 도어 여닫이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 미선택 시 가스 3구 쿡탑이 기본 설치됩니다.
- 인덕션 쿡탑 유상옵션 선택 시에는 가스 3구 쿡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2.08.03.	입주지정일
본(本)다이닝	84A, 84B	•와이드 다이닝 공간 + 고급형 아일랜드장 + 소름형 장식장 + 주방우물천장 + 주방간접조명	7,800,000	780,000	780,000	6,240,000
	99A, 99B	•와이드 다이닝 공간 + 고급형 아일랜드장 + 소름형 장식장 + 주방펜트리 + 멀티룸(슬라이딩 도어) + 주방우물천장 + 주방간접조명	10,600,000	1,060,000	1,060,000	8,480,000
	140	•고급형 아일랜드장 + 소름형 장식장 + 주방펜트리 + 주방우물천장 + 주방간접조명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프리미엄 키친	84A, 84B	•본다이닝 + 주방전동형상부장 + 고급형 렌지후드	12,600,000	1,260,000	1,260,000	10,080,000
	99A, 99B		16,800,000	1,680,000	1,680,000	13,440,000
	140		15,500,000	1,550,000	1,550,000	12,400,000
	160P, 170P	•주방전동형상부장 + 고급형 렌지후드 + 고급형 아일랜드 + 주방우물천장 + 주방간접조명	11,400,000	1,140,000	1,140,000	9,120,000
주방 세라믹 상판 + 벽체 (기본형 평면/기본형 가구)	63	•주방 세라믹 상판 + 벽체(일반형)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84A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84B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99A, 99B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140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160P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170P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주방 세라믹 상판 + 벽체 (본다이닝/기본형 가구)	84A, 84B	•주방 세라믹 상판 + 벽체(본다이닝 선택시)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99A, 99B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140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주방 세라믹 상판+벽체 (본다이닝/프리미엄 키친)	84A, 84B	•주방 세라믹 상판 + 벽체(본다이닝 + 프리미엄 키친 선택시)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99A, 99B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140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160P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170P	•기본형 평면 + 프리미엄 키친 ※본다이닝 미적용(선택 불가)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항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2.08.03.	입주지정일	
올인스토리지	84A, 84B		• 알파룸 → 대형 수납공간 (시스템 가구)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주방 슬라이딩 도어	140, 170P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스타일링바스 (공용욕실)	84A, 84B, 99A, 99B		• 건식세면대 및 상하부장, 포켓 슬라이딩 도어 변경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프리미엄바스 (공용욕실)	140, 160P, 170P		• 타일, 수납장, 세면대 상판, 도기 및 약세사리, 수전류 고급마감 변경 ※샤워부스 및 욕조는 변경 없음 ※펜트 타입 침실1의 욕실(욕실3)은 옵션 없음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프리미엄바스 (부부욕실)	140, 160P, 170P		• 타일, 수납장, 세면대 상판, 도기 및 약세사리, 수전류 고급마감 변경 • 140 타입 : 안방 파우더 유상옵션형(듀얼파우더)으로 변경 ※샤워부스 및 욕조는 변경 없음 ※펜트 타입 침실1의 욕실(욕실3)은 옵션 없음	9,600,000	960,000	960,000	7,680,000	
자녀방 붙박이장	63		• 침실1 (w1420)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84A		• 침실1 (w1720)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침실2 (w1420)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84B		• 침실1 (w1770)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 침실2 (w1420)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99A, 99B		• 침실1 (w1720)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침실2 (w1720)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140		• 침실1 (w2020)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 침실2 (w1720)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160P, 170P		• 침실2 (w1720)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침실3 (w2020)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안방 슬라이딩장	84A, 84B, 99A, 99B		• w3600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140, 160P, 170P		• w3900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슬라이딩 도어	140, 160P, 170P		• 140 : 침실3, 160P/170P : 알파룸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침실 룸인룸+복도수납장	63		• 복도수납장, 룸인룸 침실1 붙박이장(w1890), 룸인룸 슬라이딩 도어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바닥 포슬린타일	63		• 포슬린타일(600x600) : 거실, 주방(본다이닝 선택 시 주방펜트리 포함), 복도, 케어룸(63, 140, 펜트 세대 제외) 포함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84A, 84B			일반형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본다이닝형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99A, 99B			일반형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본다이닝형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140			일반형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본다이닝형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160P			일반형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170P		일반형	6,100,000	610,000	610,000	4,880,000		

항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계약시	2022.08.03.	입주지정일
거실/복도의 벽 마감 고급화 [프리미엄 마감재]	63, 84A, 84B, 99A, 99B	• 대형 포슬린타일(1200x600) : 아트월 + 상부조명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140	• 대형 포슬린타일(1200x600) : 아트월 + 복도 + 상부조명 + 시트판넬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160P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170P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현관 중문	84B, 99B	• 중문(여닫이) + 신발장 하부 조명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63, 84A	• 중문(1픽스 2연동) + 신발장 하부 조명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99A	• 중문(1픽스 2연동) + 신발장 하부 조명	2,650,000	265,000	265,000	2,120,000
	140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160P, 170P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전동커튼	63, 84A, 84B, 99A, 99B, 140	• 거실, 안방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160P, 170P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63	• 거실 우물천정 내 간접조명 + 거실, 침실 감성조명	2,050,000	205,000	205,000	1,640,000
	84A, 84B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99A, 99B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140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160P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170P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각 타입의 유상옵션 미선택에 따른 평면은 상이하니 기본형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이 적용된 평면으로 기본형은 도면 및 VR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B, 99B 타입에서 현관 중문 선택 시 복도 수납장 폭이 변경됩니다.
- 중문옵션 선택 시 신발장 하부 조명이 추가되며 센서등과 연동되어 점등됩니다.
- 중문옵션 선택 시 84B, 99B 타입은 여닫이 도어이며 나머지 타입은 견본주택과 같이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됩니다.
- 63 타입은 본다이닝 선택형이 없습니다.
- 63 타입 룸인룸 옵션 선택 시 침실1 불박이장 옵션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본다이닝 선택 시 84, 99 타입의 알파룸이 다이닝 공간으로 변경되며 주방가구의 형태가 변경됩니다. 고급형 아일랜드는 세라믹타일 상판, 서랍형/조명형 하부장이 설치되며, 쇼룸형 장식장이 설치됩니다.
- 84A, 84B, 99A, 99B, 140 타입은 본다이닝 선택 시 주방 천장에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이 설치됩니다.
- 160P, 170P 타입은 프리미엄 키친 선택 시 주방전동상부장 및 상·하부장 마감특화, 고급형 렌지후드가 설치되며 세라믹타일 상판의 고급형 아일랜드, 주방 우물천장 및 간접조명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키친은 본다이닝 평면을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주방전동상부장과 주방가구 일부 마감특화, 고급형 렌지후드가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키친 미선택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 및 후드 등의 디자인과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분양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키친 미선택 시 84 타입 주방 상부장, 99 타입 주방 상·하부장이 도장마감 제품으로 설치되니 상세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미엄 키친은 본다이닝 평면을 선택 시, 평면 변경 및 아일랜드 후드 적용으로 인덕션과 이격된 곳에 가스배관 및 밸브가 노출 설치됩니다. (추후 입주자가 별도로 가스쿠팡 및 2차측 배관을 설치할 경우 배관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법에 적법하게 설치가 필요함)
- 주방 상판·벽체 세라믹타일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체는 타일로 마감되며 기본마감재 샘플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판·벽체 세라믹타일 유상옵션은 본다이닝 유상옵션, 프리미엄키친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범위가 상이하니 선택하시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9 타입 기본형에는 LG 오브제 냉장고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하나 본다이닝 평면 선택 시에는 평면 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침실1, 2, 3에는 자너방 불박이장을 유상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일부 침실 제외)
- 140 이상 타입의 프리미엄바스의 상부장과 은경의 조명 부위에 욕실 사용 시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40 타입 부부욕실 프리미엄바스 선택 시 안방 파우더가 견본주택과 같이 듀얼파우더 형태로 적용됩니다.
- 프리미엄바스 미선택 시 욕실 형태는 유사하나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도기류, 수전류, 악세사리류가 기본형으로 설치되니 도면 및 마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링바스 선택 시 습식공간에는 변기와 욕조가 설치되며 욕실장 크기와 디자인이 변경되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 포슬린타일 옵션 선택 시 케어룸과 스타일링바스 바닥이 동일한 타일로 설치되며 바닥타일 옵션 미선택 시 케어룸은 강마루, 스타일링바스에는 기본형 타일이 설치됩니다.
- 84 타입의 올인스토리지 옵션과 본다이닝 옵션은 동시에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1개만 선택 가능)

- 140, 160P, 170P 타입의 마감특화는 거실 아트월 및 복도에 대형타일 및 타일 상부에 등박스, 복도에 시트판넬 마감에 적용되며, 타입별로 마감재 설치 부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선택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3, 84, 99 타입의 마감특화는 거실 아트월 대형 타일 및 타일 상부에 등박스가 적용됩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신발장 가구의 크기 및 디테일이 변경됩니다.
- 평면 유상옵션(본다이닝, 롬인롬, 스타일링바스 등) 선택에 따라 바닥타일 유상옵션 시공범위가 상이하니 선택 전 설치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천장의 커튼박스 및 몰딩의 설치 부위 및 모양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다이닝 유상옵션 미선택 시, 식탁용 조명기구의 타입 및 수량은 변경 설치됩니다.
- 전동커튼 시스템 유상옵션 선택 시, 커튼 구동기, 커튼레일이 설치되고, 리모컨이 제공됩니다. (커튼지는 별도 구매임)
-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기능은 거실등, 침실등의 색온도와 밝기가 제어되고, 거실 우물천정에 LED간접조명(접소등 제어)이 적용됩니다. (알파룸은 감성조명 옵션 제외임)
- 감성조명 제어는 거실은 월패드, 침실은 통합스위치에서 제어되며, 더샵 전용 스마트폰 App. 및 음성인식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단, 음성인식 제어 기능은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된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과 거실 및 복도 아트월면 상부 조명은 스마트 감성조명 더샵 루미나 옵션과는 별도 옵션입니다.

■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우리은행	1005-704-284226	(주)포스코건설

-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공사비의 납부주체(타인명의 등)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계약 미체결), 중도금 미납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가선택품목(가전제품, 가구 및 마감재 옵션) 공사는 시행수탁자와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 거실(주방, 식당), 복도 • 타일, 디딤석(걸레받이 포함) : 현관바닥 • PVC롬 : 각 침실바닥(다목적실 포함) • 타일 및 재료분리대 : 발코니, 실외기실, 욕실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실 바닥 미장 마감 •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다목적실), • 발코니 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리브
벽, 천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지 및 천장지 : 현관,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 알파룸 • 벽 및 천장 도장 : 발코니, 실외기실 • 타일 : 거실아트월, 주방벽, 욕실벽, 인테리어 마감 • 기타 : 몰딩, 우물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기구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센트 및 스위치용 배관, 배선
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바닥 및 벽 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천정재, 인조석(인조대리석 선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 전기, 통신배관 배선

	•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욕조,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폰, 세면기, 양변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및 기타사항	•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주방벽/상판, 주방수전, 싱크볼, 음식물탈수기, 가스쿡탑(3구), 렌지후드, 냉장고장 및 김치냉장고장	• 설비배관(급배수, 난방, 가스), 소방관련시설,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붙박이장, 현관창고, 팬트리도어, 파우더장, 드레스룸도어, 시스템가구(세탁선반 포함)	• 없음
창호 및 기타사항	•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 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현관카메라,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실외기실 플라스틱 출입창호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63	84A	84B	99A	99B	140	160P	170P
기본선택 (마이너스옵션 금액)	12,000,000	14,000,000	14,000,000	19,800,000	19,800,000	23,100,000	25,300,000	25,300,000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VIII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위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비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오차 면적은 특정 세대에 합산하여 등기 시 등재 예정이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럭,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지분면적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단, 단위세대 벽체 공용면적은 단위세대에 배분)되었으며,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 또한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 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로고,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 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도로, 소공원, 주차장부지, 종교부지, 상하수도,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터널 등)은 사업주체의 시공범위이며, 시공회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완충녹지, 터널 등)과 연계된 단지 내 동선(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경계부의 조경 및 포장은 인·허가청의 협의에 따라 위치, 선형, 재료,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 외부 진입도로(주출입구 방향)의 터널 부위는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에 따라 터널의 높이, 모양,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로 인하여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수곡초 전용 가능 교실을 개조하여 배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학생 유입 시점에 학생 변화 추이가 변경되어 수곡초에서 유입 학생 수용이 불가할 경우, 인근의 성화초 등으로 통학구역 분할이 검토될 수도 있으며, 최종 통학구역은 입주년도 전년도에 청구교육지원청 결정에 따릅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청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근 우수 및 생활하수가 단지 내를 통하여 배출되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저층부 세대는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로 인한 조망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04~107동 저층 세대는 전면 옹벽으로 인한 일조 및 조망 간섭 등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4동 동측에 방음벽(H=18m)이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위치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착공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측 1순환로 고가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인접 세대는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측 종교시설, 사숙 상수 가압장, 남측 개선 배수지 및 광장, 단지 주변 구룡공원 산책로가 인접하고 있어, 인접 세대 주거환경(소음, 조망 등)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소공원, 주차장부지, 종교부지, 완충녹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로 인한 분진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어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체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및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평면 및 마감재의 유사옵션이 적용된 형태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마감재/가구형태/가전/평면형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별도 분양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사이버 견본주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84A, 99A, 140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위세대, 부대시설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환기디퓨저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VR)은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84A, 99A, 140)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63, 84B, 99B, 160P, 170P)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등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 및 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아트웍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및 훼손 등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 이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을 입주 또는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및 고지서상의 명의 여부에 관련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자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 금액 납부 불이행에 따라 사업주체(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구룡개발㈜)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용승인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간 해태 시 과태료 부과)
- 조경용 조명 및 보안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야간조명은 연출된 것으로 실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외부도색, 옥탑 구조물 형상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시설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행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으며, 펜트하우스 테라스 구간의 트랜치 관리는 해당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구간은 소방법상 비상 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위해 식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조경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부지 특성상 옹벽(절삭도, 성토, L형 옹벽 등)이 시공되고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절삭도 옹벽으로 인해 일조 및 조망의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동은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이며, 다른 동도 기타 옹벽으로 인해 저층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필히 이 점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옹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주출입구는 '서부로'에서 단지로 진입 가능하며(너비 18m, 서부로부터 단지까지 123.02m(터널 길이 35.89m 포함)), 단지의 부출입구는 '1순환로'에서 단지로 진입 가능합니다. (서부로부터 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 길이 및 터널의 길이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소음 측정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104동 동측 보행자 출입구쪽에 방음벽(높이 18m, 길이 31m)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방음벽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은 입주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구룡개발㈜), 지자체, 시공사가 관리 및 유지보수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며, 사용검사 이후 방음벽의 공사금액이 포함된 하자보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필로티 하부에 자전거 보관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출입 통행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에 계획된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작은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편의시설(멀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되고,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주체에 따른 입주민들이 자체적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외벽에 장식, 동표시, 동번호, 로고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위치 및 종류, 수량, 포장 패턴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옹벽 및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 레벨은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에 석축 또는 옹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석축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실 시공 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계/전기시설은 인-허가를 통하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 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동측으로 인-허가에 의한 방음벽(H=18m)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견본주택에 비치된 착공도서 또는 사업승인변경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내

-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지상 총 12대(조업주차 2대 포함))은 아파트와 별도로 설치 및 구획되어 있고, 104동 북측, 107동 서측 지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의 해당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동측, 102동 북측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105동 북측 지하1층에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하고, 105동 북측, 106동 동측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독서실, 멀티룸 등)이, 107동 북측 지하1층에 맘스스테이션이 위치하여 있으며,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과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일부 옥상에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용을 위한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관리를 위한 인원이 접근 가능하여 인근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을 위한 차량 및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7동 저층 세대는 계약 전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 주차장은 지하 1~3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02동~104동은 지하 1~3층, 101동, 105동~107동은 지하 1~2층까지 연결됩니다. 지하 3층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세대는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너비 2.5M, 길이 5.0M로 설치되고, 일부 주차는 확장형 주차(너비 2.6M, 길이 5.2M), 경형 주차(너비 2.0M, 길이 3.6M), 장애인 주차(너비 3.3M, 길이 5.0M)로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하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천창)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정화조, 방음벽, 염수분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경비실, 문주 등),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잔디광장,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물놀이터(어린이놀이터1), 수경시설, 휴게소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동의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는 화재 시 자동폐쇄 장치에 의해 개폐 가능한 창호가 총 3개소(저층/중층/고층 각 1개소)에 설치됩니다.
- 102동, 103동 사이 지상 주차장은 지하2층 주차장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 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 동의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물놀이터(어린이놀이터1), 주민운동시설 등에 인접한 해당 동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배치도, 모형 등 참조)
- 단지 내 조경시설 중 물놀이터(어린이놀이터1)는 물놀이 시설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이며, 준공 후 사용 시 관리주체가 안전요원을 선임,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물놀이터를 포함하여 단지 내 설치된 수경시설(물놀이터, 산수정원 등)의 안전, 보건, 수질 관리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 운동을 위한 시설로써 이용 시 관리 소홀로 인한 냄새,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며, 헬시가든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자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 램프의 위치/길이, 점자블럭의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녹지 구간에 에어매트 설치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며, 이 공간에는 교목을 식재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 부지 및 공원은 실시계획인가의 설계에 따라 산책로 또는 소음 발생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냉·난방 실외기,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는 조망,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 및 일부 옹벽 마감은 석재 및 지정도장 마감이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조 바랍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위세대 기본 천장고는 2.3M(거실, 침실 기준)이며, 욕실, 실외기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상이합니다.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설치 시 천장고가 기본 천장높이와 상이하며 우물천장 높이는 세대별 시공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다용도실에 가스 인입을 위한 날개벽이 계획되어 견본주택과 다르게 창호 위치가 날개벽만큼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과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안·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2층 이상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필로티 상부층, 경로당, 주민편의시설/게스트하우스 상부층 세대 제외)
- 실외기실 내부에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난구 바닥에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보안 기능이 있어 개폐 시 해당 세대와 하부세대에 경보 및 월패드에 연동되며 하부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 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장형 선택 시 인접 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 설치에 따른 이형 벽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가구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 선택 시 발코니 외부창호는 단창이 시공되며, 발코니로 나가는 문에는 일반 슬라이딩 단창이 설치되며, 사업승인 인허가 도서에 근거하여 따릅니다.
- 확장형 선택 시 거실 및 침실 등에는 일반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단, 안방에는 일반 슬라이딩 단창이 설치됨) 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기술적인 검토로 디자인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및 유리의 공급사(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급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인허가조건, 풍압 테스트 및 기타 시공 여건에 따라 창호 및 유리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세대 대비하여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 제공량이 상이하므로 카탈로그 상 이미지를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선택형(가구, 가전, 가변형 벽체 등)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만 시공합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63, 84B 타입의 마감은 84A의 마감재와 동일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재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99B 타입의 마감은 99A의 마감재와 동일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재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160P, 170P 타입의 마감은 140의 마감재와 동일하며, 평면 형태에 따라 일부 마감재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40 타입 공용욕실 세면대 공간은 건식공간으로 계획되어 세면대 하부에는 배수구가 없으며, 샤워부스와 변기 부스 쪽에 배수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커튼박스 길이 및 높이는 천장배관, 유상옵션 선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평면에서는 주방 우물천장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형 평면에서 제공되는 거실 우물천장은 루미나 옵션(간접조명 설치), 천장형 에어컨 설치에 따라 우물천장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인조대리석, 세라믹타일 등은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패턴 및 색상 등이 견본주택 설치 세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자재,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타일류(세라믹타일 포함) 등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발코니 등 타일 패턴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난간대 높이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충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도교통부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 등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실외기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 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욕조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발코니2(보조주방) 출입문은 단열성능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비확장 시 확장세대와 상이합니다.
- 본 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주방가구에 설치된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으로, 가스식 건조기 설치를 위한 연도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스식 설치 불가) ※건조기는 전시를 위한 것으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 및 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인원 드레스룸 무상옵션은 63, 84A, 84B 타입에 제공되며, 파우더룸의 제공 유무 및 부부욕실 도어 위치가 변경되므로 반드시 분양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인승, 설치 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승강기 속도 사양이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탑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되므로 상부층 세대에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 세대의 소음 및 진동, 조망권 침해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TV 안테나는 전파 수신이 양호한 동(104동)에 옥상층 또는 옥탑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이동통신기간사업자의 안테나 및 중계기가 3개동(102동, 105동, 106동)의 옥상층 또는 옥탑층,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 및 충전용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침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옥외 보안등의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 수량 및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무인 택배보관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벽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1등급에 준하여 설계/시공됩니다.
- 비상 발전기는 관련 법규상 일정 주기로 시험 운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전 시 운전 전에 따른 소음, 배기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의 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침실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60P, 170P 타입 온수분배기는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 및 드레스룸 내에 설치가 되며,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동빨래건조대 사용 시 다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천장(160P, 170P),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에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며 점검을 위해 장비와 덕트가 노출되거나 확장형 다용도실인 경우는 천장마감 및 점검구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난방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 및 별도의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다용도실 등은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가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보일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 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 및 보조주방, 다용도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주차입구 공사 시 설치되는 염수분사시설의 염수보관탱크 및 자동제어장치의 부지 내 설치 시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인에게 있습니다.
- 소방 설비는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단지 내 소화 활동을 위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105동 옥상에 설치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생활폐기물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치 및 개소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생활폐기물 보관소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4개소(101, 102동 / 103, 104동 / 106, 107동 각 2개동 인근에 1개소, 105동 인근에 1개소) 및 지하1층 주차장 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소음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동별 위치 및 주동 출입구에서의 동선에 따라 세대마다 거리가 다를므로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과 102동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1동과 102동 사이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소를 사용하여야 하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과 104동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3동과 104동 사이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소를 사용하여야 하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6동과 107동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6동과 107동 사이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소를 사용하여야 하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104동, 107동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 택배보관함은 각 동 지하 1층에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입주주민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의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및 내부 형태,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 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는 준공 전 개설 완료 예정이며 다만 준공 전 미개설 시 입주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이며,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04동 북측, 107동 서측 방향으로 지하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지붕 또는 건물 주변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지상1층, 102동 북측, 105동 북측, 106동 동측, 107동 북측 방향으로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지붕 또는 건물 주변에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차량 출입구와 인접하게 위치한 101동, 103동, 104동, 107동의 저층부 세대는 차량 진출입 시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옥상 및 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조망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가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조경면적 축소 및 인접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붕 및 지상 1층 인근에 실외기 및 DRY AREA가 설치되어 인접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107동은 근린생활시설과 가까워 냄새 및 소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건축물 하부의 마감 재료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에 따라 설치 예정이며, 석재 설치 등 단지 특화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7g(내진 능력)입니다.
- 103동 5호 라인, 104동 1호 라인 인근에 전기실, 발전기실용 D·A가 위치하여 인접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문주 설치로 인한 인근 동 저층 세대 조망 및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7동, 104동(향후 부출입구 문주가 설치될 경우에 한함) 저층 세대 계약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101동, 105동과 106동 사이에 옥외 운동시설이 위치하여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필로티는 101동 1호, 3호, 4호 라인, 102동 3호, 4호 라인, 103동 2호, 3호 라인, 104동 2호, 3호, 5호 라인, 105동 4호 라인, 106동 4호 라인, 107동 4호 라인 하부에 1개층, 105~107동 2호 라인 하부에 2개층입니다.
- 105동, 106동, 107동 하부에는 데크층이 형성되어 있으니 관련 세대의 입주예정자는 위치를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인조대리석 등은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가구 및 액세서리 구성은 세대 타입 및 무상선택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평면은 옵션 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으며, 품목별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조명기구는 사양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스마트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실 내부(시아에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공사 시 공사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음)
- 세대 내 안방 및 침실에 적용되는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 온도 조절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 차단, 난방온도조절기능을 분리하여 개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 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한 무선 AP가 설치되며, 인터넷 회선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세대 내 월패드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하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 동체 감지기는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 부위 방법을 위하여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 주기는 통상 1년이며, 사용 여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에는 전기/통신 통합형 수구가 설치되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안방 발코니에 전동 빨래건조대(리모컨 타입)가 설치되며, 별도의 발코니 조명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쿡탑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 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 전원은 단상 220V(60Hz)가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를 2대 이상 설치 시 전기 용량이나 환기량 부족에 기인한 장비 소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세대 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경우 특정 전자기기에 한하여 호환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세대 내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오배수관, 급수급탕분배기는 아래층 세대의 해당 위치 천장내에 설치되며 상층 세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난방온수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구간, 알파룸,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개별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며 사용 시 보일러 가동 소음과 다소의 진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보일러 가동 특성상 수전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랜지후드 상부장에는 천장내부에 설치된 헤파(FAN) 점검구와 자동식 소화기 장치가 설치되어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액세서리류, 냉매배관박스,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 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등에 도시가스 배관 및 미터기가 설치되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세대 내에 가스정압기(감압기) 또는 신축 엘보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또는 청정환기유니트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되어 실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에 전열교환기나 연결덕트, 기타 환기덕트, 상부층 배수관 등은 부득이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각 주택형별 실외기실 공간 면적이 상이하므로 입주 후 사용 예정인 실외기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실외기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우수나 배수용 배관이 노출로 설치되어 상층부 사용 시 생활 소음이 다소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위치나 수량은 각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 가변형 벽체 여부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난방제어구획, 스프링클러 헤드와 환기 디퓨저의 배치와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및 필로티 지상층은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호스 내 고인 물은 퇴수시켜 주십시오.
- 동파 예방을 위해 보일러 하부 배관에 동파방지열선이 설치된 경우 동절기에는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각 동 입면상 세대 각종 급배기구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각 동 출입구 천장과 지하주차장은 배관, 배선,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지하 주차장 및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 물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101~102동, 105~106동 주변에 주민공동시설, 104동 동측에 외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 세대에 소음 및 조망 간섭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층에는 경로당이 위치하여 소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경로당 옥상 바닥을 2층 2호 라인 세대가 공유하고 있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에는 적절한 설치기준에 준수할 예정입니다. 단, 상기 계획은 인·허가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 관련 사항

- 견본주택의 스마트홈 기능 홍보 및 구현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 회선(단독 IP)을 설치해야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 소등 및 가스차단 등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홈 전용 어플 및 세대인증 필요,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 발생함)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공동현관 문열림 서비스 및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개발 여건에 따라 명칭, 적용범위, 적용시점, 사용 방법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동작을 위하여 OS버전은 Play Store(안드로이드) 및 App Store(i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더샵 스마트폰 어플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상태로 주차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차 위치 안내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 센서 기능이 없는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및 NFC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일부 모델은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세대 디지털도어락에 등록 가능하나, 보안상의 이유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일 인식번호로 생산된 일부 카드와 스마트폰 등록 시, 같은 종류의 다른 카드 혹은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식되어 문이 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단, 등록 가능한 판단의 주체는 도어락 제조사가 아닌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어락에 등록한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은 보안상 이유로 공동현관 자동출입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더샵 스마트폰 어플 실행을 통한 세대 디지털 도어락의 문열림 기능은 불가합니다.
- 대화형 더샵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더샵 단지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및 인증,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월패드 동기화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카카오톡과 연동하기 위한 카카오 계정 생성, 헤이카카오 앱 및 카카오홈 앱의 스마트폰 다운로드 및 계정 연동, 카카오톡·플러스 친구추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 시연용 생활 가전제품들은 기본으로 고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미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입주 시점에 세대별 1개 무상 제공이나,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제조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외관 디자인 및 규격, 사양, 재료, 구성품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의 구성 및 기능, 연결,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설치 장소, 품질보증, 고객센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사양 등은 제품박스 개봉 시 동봉되어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 바람여 음성인식 스피커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입주민이 직접 해당 업체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해당 업체의 AS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의 A/S정책은 제품 보증서에 기재된 A/S정책에 준하며, 기산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키분출일로부터 품질보증 기간을 기산 합니다.
- kakao i 연동 세대별 IoT 제어 서비스(조명 제어 등) 및 일부 정보 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연동 비용은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10년간 무상이나, 카카오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헤이카카오, 카카오홈 앱, 카카오톡을 통해 더샵 홈네트워크와 제어 기능(조명 제어 등), 정보기능(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서비스의 다중 사용자(가족 구성원), 다중기기 연동은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기능에 대한 명칭, 적용 범위, 적용 시점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홈 앱, 헤이카카오 앱 음성제어 및 카카오톡 챗봇의 세대 기기 제어와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범위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헤이카카오를 통한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카카오톡, 알람, 타이머, 날씨, 뉴스, 날씨, 시간, 주식, 환율, 운세 등 카카오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편의서비스는 카카오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기능(멜론을 통한 음악 듣기 등)은 이용요금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과금의 주체는 ㈜카카오에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 품목 이외 입주민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 가전제품의 종류(9종 :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전자 홈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대별 삼성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 SKT NUGU Smart Home 및 NUGU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하여 세대 기기 제어 및 세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샵클라우드와 연동되어 SKT 스마트홈, NUGU에서 제공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10년 동안 무상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후 서비스제공사의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중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의 경우,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는 서비스제공사의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자투표, 방송 TTS와 같은 부가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KT 스마트홈, NUGU 음성인식서비스 이용을 위한 앱 사용환경은 SKT SmartHome 홈페이지(www.sktsmar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T 스마트홈 IoT 홈 기기의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미포함으로 별도 가입을 권장합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LG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LG ThinQ 앱에 제품등록 및 더샵 통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옵션 제공 품목 이외 입주인이 개별 구매 후 포스코 더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iQ Home)과 연동 가능한 LG전자 생활가전 제품(8종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의 종류 및 서비스 기능은 당사 및 LG전자의 운영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LG ThinQ 앱 사용환경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세대별 LG전자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전환 시 홈IoT 플랫폼 제공사 정책에 따릅니다.

I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본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확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 확인

■ 입주예정일 : 2026년 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50세대 이상 단지) 제공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한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고 입주지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3개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

-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지하1층 2.7m(101~107동에 한함), 지하2층/지하3층 2.3m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 지하1층 2.7m, 지하2층/지하3층 2.3m

■ 공동주택 하자 보수 :

- 하자보수 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 더샵 청주그리니티 건물의 시공은 (주)포스코건설이 하되, 부지조성공사(터파기 포함)에 한하여 구룡개발(주)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리드종합건설(주)가 공사를 수행합니다. 이에, 부지조성공사(터파기 포함)에 한하여 구룡개발(주)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리드종합건설(주)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부지조성공사 외의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 일체는 (주)포스코건설 및 구룡개발(주)가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집니다. (단, 부지조성공사의 하자 발생 시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은 없지만, (주)포스코건설이 우선 하자보수에 응하고, 리드종합건설(주)와 협의 및 리드종합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함)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고단열 고기밀 현관문		적용	1등급
창의 기밀성능 (세대 직접외기 이중창)		적용	1등급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비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적용 안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설기준 지침)

- 이 지침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배려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에 이를 적용합니다.
-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적용합니다.
- 좌식 싱크대 적용 시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 공간 협소로 온수분배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를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니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며, 전매 시에도 상기 사항이 같이 포함됩니다.
- 입주민의 편의상 타 세대와 달리 시공이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하자 및 민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시설 내용		제공 대상
현관	마루 굽틀 경사로	•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욕실	단차 없애기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화장실 단차를 줄임 ※유의사항 : 추후 물넘침 등의 부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고령자 • 지체장애인
	미끄럼방지 타일	•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출입문 규격확대	• 유효 폭을 80cm로 변경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개폐방향 변경	• 안여닫이 → 밖여닫이 (도어스토퍼 미시공)	
주방	좌식샤워시설	• 욕조 대신 샤워공간 제공 •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2개, —자형 1개)	• 지체장애인
	좌식 주방 싱크대	• 휠체어·의자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수대 하부장 변경	

		※유의사항 : 음식물처리기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선택 불가 ※온수분배기 위치 이동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부분 주방가구를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가스밸브 높이조정 점자스티커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 현관 입구의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 지체장애인 • 시각장애인
주동·통로 유도시설			

■ 친환경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 주택건립시기에 따른 관련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1. 공동주택명: 구룡 신원공동주택(구룡) 공동주택 2. 신 청 자: ㈜하나자산신탁 3. 대 지 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천동 신원4-1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p> <p>가. 소용 급률 등급</p> <table border="1"> <tr><td>상능등급</td><td>상능등급</td></tr> <tr><td>1. 공동주택 사용가능</td><td>★★★★</td></tr> <tr><td>2. 공동주택 사용가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광역적 사용가능</td><td>★★★★</td></tr> <tr><td>4. 공동주택 사용 가능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급</td><td>★★</td></tr> <tr><td>5. 외장 마감 소용</td><td>★★★★</td></tr> </table> <p>나. 구조 성능 등급</p> <table border="1"> <tr><td>상능등급</td><td>상능등급</td></tr> <tr><td>1. 내방풍</td><td>★★</td></tr> <tr><td>2. 방열방수</td><td>★★★★</td></tr> <tr><td>3. 수리유리 성능부분</td><td>★</td></tr> <tr><td>4. 유리단열 성능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고품질 등급</p> <table border="1"> <tr><td>상능등급</td><td>상능등급</td></tr> <tr><td>1. 기존 내장재 교체/제거</td><td>★★★★</td></tr> <tr><td>2. 기존 외장재 교체/제거</td><td>★★★★</td></tr> <tr><td>3. 소용급 절연소용 최소화</td><td>★★★★</td></tr> <tr><td>4. 공동 주택외벽 내장재 교체/제거</td><td>★★★★</td></tr> <tr><td>5. 내장재 절연</td><td>★★★★</td></tr> <tr><td>6. 세너 모노리빙 및 단열재 교체</td><td>★★★★</td></tr> <tr><td>7. 기·수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8. 지열·지수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9. 온수 배관 교체/제거 시설</td><td>★★★★</td></tr> <tr><td>10.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1.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2.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3.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4.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5.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6.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7.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8.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19.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r><td>20. 배관처리 시설</td><td>★★★★</td></tr> </table> <p>라. 화재·소방 고품질 등급</p> <table border="1"> <tr><td>상능등급</td><td>상능등급</td></tr> <tr><td>1.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2.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3.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4.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5.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6.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7.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8.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9.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0.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1.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2.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3.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4.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5.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6.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7.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8.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19. 방화벽 설치</td><td>★★★★</td></tr> <tr><td>20. 방화벽 설치</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상능등급	상능등급	1. 공동주택 사용가능	★★★★	2. 공동주택 사용가능	★★★★	3. 세대 간 광역적 사용가능	★★★★	4. 공동주택 사용 가능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급	★★	5. 외장 마감 소용	★★★★	상능등급	상능등급	1. 내방풍	★★	2. 방열방수	★★★★	3. 수리유리 성능부분	★	4. 유리단열 성능부분	★★	상능등급	상능등급	1. 기존 내장재 교체/제거	★★★★	2. 기존 외장재 교체/제거	★★★★	3. 소용급 절연소용 최소화	★★★★	4. 공동 주택외벽 내장재 교체/제거	★★★★	5. 내장재 절연	★★★★	6. 세너 모노리빙 및 단열재 교체	★★★★	7. 기·수 배관처리 시설	★★★★	8. 지열·지수 배관처리 시설	★★★★	9. 온수 배관 교체/제거 시설	★★★★	10. 배관처리 시설	★★★★	11. 배관처리 시설	★★★★	12. 배관처리 시설	★★★★	13. 배관처리 시설	★★★★	14. 배관처리 시설	★★★★	15. 배관처리 시설	★★★★	16. 배관처리 시설	★★★★	17. 배관처리 시설	★★★★	18. 배관처리 시설	★★★★	19. 배관처리 시설	★★★★	20. 배관처리 시설	★★★★	상능등급	상능등급	1. 방화벽 설치	★★★★	2. 방화벽 설치	★★★★	3. 방화벽 설치	★★★★	4. 방화벽 설치	★★★★	5. 방화벽 설치	★★★★	6. 방화벽 설치	★★★★	7. 방화벽 설치	★★★★	8. 방화벽 설치	★★★★	9. 방화벽 설치	★★★★	10. 방화벽 설치	★★★★	11. 방화벽 설치	★★★★	12. 방화벽 설치	★★★★	13. 방화벽 설치	★★★★	14. 방화벽 설치	★★★★	15. 방화벽 설치	★★★★	16. 방화벽 설치	★★★★	17. 방화벽 설치	★★★★	18. 방화벽 설치	★★★★	19. 방화벽 설치	★★★★	20. 방화벽 설치	★★★★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인증 개요】</p> <p>인증명: 공동주택(구룡) 신원공동주택 인증번호: 2021-12-30-146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천동 신원4-1번지 일원 발 주: ㈜하나자산신탁 발 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p> <p>【인증 용도】</p> <p>인증명: 공동주택(구룡) 신원공동주택 인증번호: 2021-12-30-146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정 등급)건축물로 인증받았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tr><td>에너지절약</td><td>31%</td></tr> <tr><td>에너지효율</td><td>56%</td></tr> <tr><td>자원순환</td><td>31%</td></tr> <tr><td>환경친화</td><td>37%</td></tr> <tr><td>문화향상</td><td>35%</td></tr> <tr><td>생태환경</td><td>41%</td></tr> <tr><td>실내환경</td><td>42%</td></tr> </table> <p>2021년 12월 3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에너지절약	31%	에너지효율	56%	자원순환	31%	환경친화	37%	문화향상	35%	생태환경	41%	실내환경	42%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정(에너지효율)을 위한 관련 규정(별지 제 4호 서식) (개정 2013. 3. 29.)</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인증명: 공동주택(구룡) 신원공동주택 인증번호: 2021-12-30-1465-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위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정(에너지효율)을 위한 관련 규정」 제4호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tr><td>에너지절약</td><td>31%</td></tr> <tr><td>에너지효율</td><td>56%</td></tr> <tr><td>자원순환</td><td>31%</td></tr> <tr><td>환경친화</td><td>37%</td></tr> <tr><td>문화향상</td><td>35%</td></tr> <tr><td>생태환경</td><td>41%</td></tr> <tr><td>실내환경</td><td>42%</td></tr> </table> <p>2021년 12월 3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에너지절약	31%	에너지효율	56%	자원순환	31%	환경친화	37%	문화향상	35%	생태환경	41%	실내환경	42%
상능등급	상능등급																																																																																																																																							
1. 공동주택 사용가능	★★★★																																																																																																																																							
2. 공동주택 사용가능	★★★★																																																																																																																																							
3. 세대 간 광역적 사용가능	★★★★																																																																																																																																							
4. 공동주택 사용 가능도에 대한 실내·외 소용급	★★																																																																																																																																							
5. 외장 마감 소용	★★★★																																																																																																																																							
상능등급	상능등급																																																																																																																																							
1. 내방풍	★★																																																																																																																																							
2. 방열방수	★★★★																																																																																																																																							
3. 수리유리 성능부분	★																																																																																																																																							
4. 유리단열 성능부분	★★																																																																																																																																							
상능등급	상능등급																																																																																																																																							
1. 기존 내장재 교체/제거	★★★★																																																																																																																																							
2. 기존 외장재 교체/제거	★★★★																																																																																																																																							
3. 소용급 절연소용 최소화	★★★★																																																																																																																																							
4. 공동 주택외벽 내장재 교체/제거	★★★★																																																																																																																																							
5. 내장재 절연	★★★★																																																																																																																																							
6. 세너 모노리빙 및 단열재 교체	★★★★																																																																																																																																							
7. 기·수 배관처리 시설	★★★★																																																																																																																																							
8. 지열·지수 배관처리 시설	★★★★																																																																																																																																							
9. 온수 배관 교체/제거 시설	★★★★																																																																																																																																							
10. 배관처리 시설	★★★★																																																																																																																																							
11. 배관처리 시설	★★★★																																																																																																																																							
12. 배관처리 시설	★★★★																																																																																																																																							
13. 배관처리 시설	★★★★																																																																																																																																							
14. 배관처리 시설	★★★★																																																																																																																																							
15. 배관처리 시설	★★★★																																																																																																																																							
16. 배관처리 시설	★★★★																																																																																																																																							
17. 배관처리 시설	★★★★																																																																																																																																							
18. 배관처리 시설	★★★★																																																																																																																																							
19. 배관처리 시설	★★★★																																																																																																																																							
20. 배관처리 시설	★★★★																																																																																																																																							
상능등급	상능등급																																																																																																																																							
1. 방화벽 설치	★★★★																																																																																																																																							
2. 방화벽 설치	★★★★																																																																																																																																							
3. 방화벽 설치	★★★★																																																																																																																																							
4. 방화벽 설치	★★★★																																																																																																																																							
5. 방화벽 설치	★★★★																																																																																																																																							
6. 방화벽 설치	★★★★																																																																																																																																							
7. 방화벽 설치	★★★★																																																																																																																																							
8. 방화벽 설치	★★★★																																																																																																																																							
9. 방화벽 설치	★★★★																																																																																																																																							
10. 방화벽 설치	★★★★																																																																																																																																							
11. 방화벽 설치	★★★★																																																																																																																																							
12. 방화벽 설치	★★★★																																																																																																																																							
13. 방화벽 설치	★★★★																																																																																																																																							
14. 방화벽 설치	★★★★																																																																																																																																							
15. 방화벽 설치	★★★★																																																																																																																																							
16. 방화벽 설치	★★★★																																																																																																																																							
17. 방화벽 설치	★★★★																																																																																																																																							
18. 방화벽 설치	★★★★																																																																																																																																							
19. 방화벽 설치	★★★★																																																																																																																																							
20. 방화벽 설치	★★★★																																																																																																																																							
에너지절약	31%																																																																																																																																							
에너지효율	56%																																																																																																																																							
자원순환	31%																																																																																																																																							
환경친화	37%																																																																																																																																							
문화향상	35%																																																																																																																																							
생태환경	41%																																																																																																																																							
실내환경	42%																																																																																																																																							
에너지절약	31%																																																																																																																																							
에너지효율	56%																																																																																																																																							
자원순환	31%																																																																																																																																							
환경친화	37%																																																																																																																																							
문화향상	35%																																																																																																																																							
생태환경	41%																																																																																																																																							
실내환경	42%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2-101-0000800호	327,113,5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약관

<p>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택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로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구조감리
회사명	(주)승우엔지니어링	상지이앤씨(주)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금액	3,536,725,500	993,094,447	1,200,000,000	70,000,000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관리형태지신탁

1.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구룡개발(주),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주)포스코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태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구룡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3.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구룡개발(주)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구룡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구룡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4.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구룡개발(주)와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에게 있습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7.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시행수탁사	건축공사 시공사 (부지조성공사 외 일체)	부지조성공사 (터파기 포함)	시행위탁사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주)포스코건설	리드종합건설(주)	구룡개발(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401호 (모충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24, 301호 (모충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74611-0002979	150111-0077582	150111-0280979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총 1,191세대	분양문의 1670-3663
63㎡ / 84㎡A·B / 99㎡A·B / 140㎡ / 160㎡P / 1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견본주택(분양홈페이지) : www.더샵청주그리니티.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02 (분평동 332번지)